

지방정부 감독·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3.24.(화) 조선일보, 지방 정부에 ‘노동 수사권’ 주기로... 전문성 떨어지고, 업체와 유착 우려

- 업계에선 새로 선발되는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. 상대적으로 인력풀이 좁은 지방에서 단기간에 1,800명을 선발하면 검증이 충분히 안돼 감독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. (...) 노동감독관과 지역 업체의 유착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.
- 노동계 내부에선 노동 감독 권한을 지방 정부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국제 노동기구(ILO) 협약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.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만 행사하던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에 대해 지방지방 위임을 추진 중
 - 감독 대상 사업장 중 대다수(96%)인 소규모 사업장(30인 미만)에서 노동·산안 위반 및 부실이 집중되고 있어, 중앙-지방 간 협력 하에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예방 감독이 필수적이기 때문
- 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(이하 「노동감독관법」)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으로서,
 - ▲ 고소·고발·진정 등 신고사건, ▲ 노조법, 파견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제외됨

□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감독 결과 시정지시 불이행 등으로 수사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(0.8%*)이며,

* '25년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정기감독 중 수사실시 비중: 0.8%

- 이러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
▲지방감독관 전문 교육 개발·실시(수사전문과정 포함), ▲노동부 감독관 지방정부 파견, ▲중앙-지방 상시 협의 및 질의응답 체계 운영 예정

□ 아울러, 지역과의 유착 등 비리 가능성 관련하여, 「노동감독관법」은 지방 정부 및 감독관·상급자에 대해 사전·사후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음

- 노동부장관은 ▲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도·감독, 시정명령 및 취소·정지, 직무이행명령 및 감사, ▲시정명령 등 불이행시 위임 자체 철회도 가능함
- 또한, ▲지방감독관의 위법·부당한 업무처리 시 징계요구, ▲시·도지사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·간섭에 대해 필요한 조치 가능(감독관 요청 시)

□ 또한, ILO는 감독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만으로 제81호 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,

- 「노동감독관법」은 ILO 협약에서 요구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휘·통제 장치, 교육·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충실히 규정하였음

□ 향후 지방정부 감독·수사가 전문성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져 취약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, 지방감독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음

담당 부서	근로감독협력과	책임자	과 장	구현경 (044-202-7821)
	근로감독협력과	담당자	사무관	류한석 (044-202-7826)